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2038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김윤식, 이정민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유한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정진경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1. 1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8가합53138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유한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유한회사 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2. 26.자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유한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20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첫 번째 표 아래 제4, 5행의 “작성하면서, D에 이 사건 아파트 중 70세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그 후 D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70세대에 관하여 계약체결일을 2016. 6.경으로 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 아래 제2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세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 아래 제9행의 “제9호증,”과 “을 제1호증” 사이에 “제19호증의 1 내지 23,”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원인

피고 C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인 D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15억 3,800만 원,

원고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명의로 D과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맺은 하도급공사계약에 기한 하도급공사대금 9억 6,000만 원, 원고가 D의 다른 하수급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하도급공사대금 8억 1,000만 원, 합계 33억 800만 원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원고는 D에 대한 위 각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피고 C은 D과 이 사건 각 확약서 및 2016. 6.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세대에 관하여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D은 2016. 11. 17.자 이 사건 양도약정의 체결로 이 사건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에 관하여 2016. 6.경 매매(이 사건 분양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소의 적법성(채권자대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가) 을 제40호증, 을 제4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6. 10. 17. D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2016. 10. 21.까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하도급계약을 변경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D은 원고에게 수차례 위 확약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낸 점, ② D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미완성 부분,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완료 및 보완조치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③ D은 2017. 2. 13.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부실시공, 미완성 부분을 피고 C이 직접 철거 및 재시공하거나 제3자에게 발주할 예정이고, 그 비용은 기성고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한 채 위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완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제출명령결과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주장 속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와 D이 2016. 11. 17. 맺은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의 공사대금이 15억 3,800만 원임을 확인하는 한편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에 한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취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는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변제 또는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세대에 한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권리를 양도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뒤 하도급공사대금이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이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보전을 위하여 D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나머지 주장(J 및 K와 관련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지는 않는다.

2) 채권보전의 필요성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제1심법원의 2020. 7. 8.자 변론조서 중 피고 B이 D의 무자력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를 종합하면, D이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3) 소결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나. 본안(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피고 C이 이 사건 각 확약서를 통하여 D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D에게 이 사건 세대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중 70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D의 피고 C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나) 피고 C의 무자력

이 법원의 안산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8. 2. 26. 피고 B과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채무변제력의 회복을 위한 것인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제49호증의 1 내지 12, 제50호증, 제51호증의 1 내지 15, 제52호증의 1 내지 5, 제53호증, 제54호증의 1 내지 7, 제55호증, 제56호증의 1, 2, 제57호증의 1, 2, 제5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G조합과 H조합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맺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 C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었고, D에 대한 공사대금도 위 대출금 또는 위 아파트를 완공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할 예정이었다.

② 피고 C은 2017. 1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여전히 다수의 미시공 사항 및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D에 지속적으로 보완시공,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 C로서는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추가공사 내지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③ 피고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수탁자인 피고 B에 이전하게 되나 이를 통하여 우선수익자인 G조합과 H조합에게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추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고, 위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는 피고 B의 사전승낙 아래 이를 분양함으로써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소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1) 관련 법리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은 이 사건 2차 확약서를 통하여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동의하였고, D은 원고와 이 사건 양도약정을 맺어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세대에 한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나. 불확정기한의 도래

1)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1차 확약서는, 공사기간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 교부 후 1개월로 확정하고(제1항), ‘금융 및 분양이 되어 분양대금을 입금 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반환하며(제2항), D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고 피고 C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과 분양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을 2016. 11. 15.로 확정하고, 그 이상 지체 및 지연되거나 그 확정기간 내에 분양 및 금융대출이 늦어지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관한 모든 권리는 D에 귀속된다(제4항)고 규정한다. 이 사건 2차 확약서는, 이 사건 1차 확약서의 효력을 연장하되(제1, 2항), 이 사건 1차 확약서의 사용승인서류의 접수 후 그 서류에 문제가 없고 피고 C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승인이 지체 및 지연되거나 그 확정기간 동안 분양 및 금융대출이 늦어지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모든 권리는 D에 귀속되고, D 및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쳐 줄 것을 확약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위 각 조항을 종합하면, 피고 C은 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중 70세대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공하며, D이 준비한 사용승인 소요서류에 문제가 없고 피고 C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어 사용승인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할 경우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담보를 실행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피고 C이 자신의 결격사유로 사용승인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여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준하여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날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각 불확정기한이 도래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의 완주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으로부터 제공받은 준공서류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보고서, 수전설비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실시확인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증명서, 가스(기름)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등을 이용하여 일자불상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7. 12. 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은 받지 못하여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와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증의 각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대에 관하여 2016. 6.경 매매(이 사건 분양계약)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

별지

목 록

1. M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4층 M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2. R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4층 R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3. S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5층 S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4. T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5층 T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5. U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5층 U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6. V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V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7. W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W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8. X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X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9. Y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Y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10. Z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Z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11. AA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A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12. AB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B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13. AC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C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14. AD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7층 AD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15. AE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7층 AE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16. AF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7층 AF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17. AG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7층 AG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18. AH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7층 AH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19. AI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7층 AI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20. AJ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J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21. AK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K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29.0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2.3892

22. AL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L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23. AM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M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24. AN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11층 AN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25. AO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11층 AO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26. AP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5층 AP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35.7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15.2305

27. AQ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Q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28. AR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R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29. AS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S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30. AT호**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T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31. AU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6층 AU호

대지권의 표시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32. AV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7층 AV호

대지권의 표시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33. AW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7층 AW호

대지권의 표시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34. AX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8층 AX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35. AY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8층 AY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36. AZ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8층 AZ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37. BA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완주군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Q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8층 BA호

대지권의 표시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8.74㎡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419 분의 25.0598. 끝.

1) 등기원인을 표시하고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취지는 그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그 원인표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취지를 “피고 유한회사 C은 2016. 11.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각 체결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었다. 그러나 원고는, D 주식회사가 2016. 6.경 위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매매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2016. 11. 17. 위 회사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양수도계약이 아니라 최초 분양계약(매매계약)이 등기원인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본문과 같이 선행하고, 이에 맞추어 주문을 낸다.